「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9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9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재육성과장)

가.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임시휴관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장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의 정기 휴관일 및 임시휴관 사유 등을 명시(안 제14조)

❍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임시 휴관의 근거 및 공고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를 재활용하거나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안 제14조는 기존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 휴관일을 결정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정비하여,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연말 대청소일을 휴관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의 점검·정비나 도서관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가 임시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임시휴관 시 그 일시와 사유를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도서관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의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폐기되는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조례에 무상배부의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폐기·제적이 가능하고 그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7조제2항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폐기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번 개정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도서의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